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다.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

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
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정
함(안 제7조)

마.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1월 2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jaemo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6
----------	-----

발의연월일 : 2017. 1. 12.

발 의 자 : 박승희·김정현·신은호
안영수·오홍철·유제홍
유일용·이용범·이한구
임정빈·최석정 의원
(찬성자 : 10 명)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다.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정함(안 제7조)

- 마.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2)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18조, 제20조

나. 비용추계 사유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추진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들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 관리위원회

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공동주택관리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18조(관리규약) -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
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0조(충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충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충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충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충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충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충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충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충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충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충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충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세출: 층간소음 예방 위탁 교육비(예방교육), 층간소음 관련 의식 개선 및 확산 사업비(홍보물 제작 및 저감용품 지원 등), 층간소음 측정기계 구입비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2. 비용 추계결과

- 세출
 - 층간소음 예방 위탁교육 사업비: 47,500천원
 - 층간소음 관련 의식 개선 및 확산 사업비(백일장, 홍보물 제작, 저감용품 지원 등): 49,000천원
 - 기타 사항(층간소음 측량기계 구입, 공청회 개최): 8,200천원

가. 추계의 전제

- 세출: 연간 예산에 매년 5% 상승률 반영

나. 추계 결과

- 세출: 2017년 ~ 2021년 5개년: 541,427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장 강 춘 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위탁교육비, 홍보물 제작, 저감용품 지원, 증간소음 측정 기계 구입 등	104,700	101,325	106,392	111,712	117,298	541,427
	소계	104,700	101,325	106,392	111,712	117,298	541,427
재원 조달		104,700	101,325	106,392	111,712	117,298	541,427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04,700	101,325	106,392	111,712	117,298	541,427
	일반회계	104,700	101,325	106,392	111,712	117,298	541,427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